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82
----------	-------

제출년월일 : 2022. 1. 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시민 및 청소년 대상 주민참여예산 제안대회 등 개최 시 제안 우수자(팀)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안 우수자(팀)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 신설(안 제28조)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4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21. 11. 26. ~ 2021. 12. 16. (21일간)
- 입법예고 결과 : 붙임5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6
- 방침결정문 : 붙임7

< 붙임 1 >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장 선 자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정심사팀장 김 진 표
	담 당 자 성명·전화	고 민 정 (행정 3028)

<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193 465 331 499"><신 설></p> <p data-bbox="193 757 440 790"><u>제28조</u> (생 략)</p>	<p data-bbox="794 465 1366 723"><u>제28조(포상)</u>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p> <p data-bbox="794 757 1241 790"><u>제29조</u> (현행 제28조와 같음)</p>